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의결주문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 「군사법원법」(법률 제 16926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군인 등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군인 등에 대한 변호사의 공판절차에서의 의견 진술 등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 형사소송규칙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최근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군사법원 재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법정녹음 시 작성될 요약조서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당사자의 법정녹음 신청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속기·녹음신청권의 시간적 제한을 완화하며, 속기록 등 사본교부 불허 및 그 범위 제한

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제32조의4제1항 및 제40조의2제1항)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 비용 등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6조의2 신설, 제125조의2)
- 증인신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군 범죄 피해자가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1조의2부터 제131조의4까지 신설)
- 군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의 공판절차 등에서의 의견진술 등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안 제131조의5부터 제131조의13까지 신설)
- 군사법원이 보관서류를 송부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함(안 제133조의2)
- 군사법원의 재판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수행 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3조의3 신설)
-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판결선고 방식을 정비하여 판결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이해도를 제고함(안 제144조 및 제145조)
- 형사소송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송관계인의 기일 외 주장 등 부적법한 소송행위

금지함(안 제169조의2 신설)

#### 4.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군검찰부검찰관”을 “군검찰부 군검사”로 한다.

제17조의2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2조 제목 중 “인용”을 “인용과 조서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한 경우라도 재판장은 서기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증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①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의 신청은 공판기일·공판준비기일을 열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피해자”를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으로 한다.

제42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51조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56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59조의3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68조 단서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제79조제2항제2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83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85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88조의2 중 “등사”를 “복사”로 한다.

제88조의5제1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93조의3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편에 제13절(제96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절 소송비용

제96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속기·녹음·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법 제227조의2부터 제227조의10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8조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100조제4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00조의3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100조의4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100조의13제2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00조의15 단서 중 “헌병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100조의16제3항 중 “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호송헌병”을 “호송군사경찰”로 한다.

제100조의20제3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00조의21제2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05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06조의3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헌병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07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12조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113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119조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24조제1항 중 “검찰관소속부대”를 “군검사 소속부대”로 한다.

제125조의2제1호 중 “통역인”을 “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25조의3제2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126조의2 제목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등사”를 “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등사”를 “복사”로 한다.

제126조의3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등사”를 각각 “복사”로 한다.

제126조의4 제목,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등사”를 각각 “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등사”를 “복

사”로, 같은 호 단서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126조의5 제목 중 “등사”를 “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등사”를 “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사”를 “복사”로 한다.

제126조의6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26조의7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126조의8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26조의9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126조의10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27조의2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29조의8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31조의2를 제131조의14로 하고, 제131조의2부터 제131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1조의2(피해자등의 의견진술) ①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법 제338조제1항에 정한 피해자등(이하 이 조 및 제131조의3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등



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8조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과 그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들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고, 설명을 촉구할 수 있다.

④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3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의견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⑥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의견진술이나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1. 피해자등이나 피해자 변호사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사실의 인정에 관한 것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피해자등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1항의 경우 법 제204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88조의3을 준용한다.

제131조의3(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①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131조의2제1항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군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서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서면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1조의4(의견진술·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1조의2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1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제131조의5(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① 군사법원은 법 제260조의2제1항에 정한 피해자등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군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그 변호사(이하 “피해

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1조의6(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피해자 변호사는 군판사의 정면에 위치한다.

제131조의7(피해자 변호사의 의견 진술) ① 군사법원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기일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신청은 제131조의5제1항에서 정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 또는 제출과 함께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의 순서와 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게 질문할 수 있고, 설명을 촉구할 수 있다.

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4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⑥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변호사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⑦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나 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1조의8(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① 제131조의7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은 의견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균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도 해당 기일에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 있을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31조의7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인이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1조의5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제131조의9(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① 재판장은 제131조의7제7항의 사유가 있거나 재판의 진행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견의 진술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의 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군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서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서면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다.

④ 제131조의5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제131조의10(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제131조의7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1조의9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제131조의11(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재판장은 법 제260조의2제6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판절차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검사에게 그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1조의12(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131조의5부터 제131조의11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준용한다.

제131조의13(피해자 변호사의 열람·등사의 신청) ① 법 제260조의2제4항에 따른 피해자 변호사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열람·등사할 서류나 증거물을 특정하고, 그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등사가 피해자 등의 피해 방어와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31조의14(종전의 제131조의2)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32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33조제1항 본문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133조의2제1항 중 “검찰청”을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한다.

제133조의3제1항 중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를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유식별정보”를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3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134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134조의3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134조의4제1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34조의5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139조제1항 및 제3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140조제1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141조제1항제2호 중 “검찰관으로”를 “군검사로”로,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42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4조(판결의 선고)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②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제144조의2제1항 중 “보호관찰등”을 “보호관찰 등”으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를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5조의2 제목 중 “등본”을 “등본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서 초본을 송달할 수 있다.

제146조의3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152조의5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52조의6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53조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같은 조 제3호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165조의2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165조의4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165조의6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헌병부대”를 각각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165조의7제1항 중 “관할헌병부대”를 “관할군사경찰부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헌병부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167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9조의2(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① 소송관계인은 기일 외에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구속, 공소사실 또는 양형에 관하여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을 어긴 소송관계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기일에서 그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

제170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군사법원은 지체없이 검찰관의  
신청서부분을 피고인이나 피의  
자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  
야 하고, 피고인의 신청서부분  
은 검찰관에게 송달함과 함께  
공소를 접수한 군사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찰관,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제3항의 신청서  
부분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3항의 군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① 공소제기전의 사  
건에 관하여 관할이전의 결정  
을 한 경우 결정을 한 군사법  
원은 결정등본을 검찰관과 피  
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송부하  
여야 하며, 검찰관이 그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에 그 결정등본을 첨부  
하여야 한다.

②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  
여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군사법원은 결정등  
본을 검찰관과 피고인 또는 변

군검사

군검사

④ 군검사

제6조(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①

군검사와

군검사가

②

군검사와

호인 및 사건계속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조(소송기록등의 송부방법)

① (생략)

② 제1항의 송부를 한 군사법원 및 송부를 받은 군사법원은 각각 그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검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대표변호인의 지정 등의 통지)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한 때에는 검찰관 및 대표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및 검찰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검찰관,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재판서의 등본,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① 법 제79조에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소송기록등의 송부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군검찰부 군검사-----  
-----.

제17조의2(대표변호인의 지정 등의 통지) -----

-----  
-----  
----- 군검사 -----

-----  
-----  
----- 군검사 -----  
-----.

제27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군검사 -----  
-----.

제29조(재판서의 등본,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① -----

규정된 기타의 소송관계인이라 함은 검찰관, 변호인, 보조인, 법 제397조 및 제3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권자등을 말한다.

② (생략)

제32조(조서에의 인용) (생략)

<신설>

제32조의4(속기 등의 신청) ①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의 신청은 공판기일의 1주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공판기일부터 1주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판기일 지정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  
----- 군검사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조서에의 인용과 조서의 작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한 경우라도 재판장은 서기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증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의4(속기 등의 신청) ①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의 신청은 공판기일·공판준비기일을 열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있다.

②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찰관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① 재판장은 법 제87조의3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보호 또는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2조(속기, 녹취의 허가)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 또는 녹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

② ----- 군검사

-----  
-----  
-----  
-----  
-----  
-----  
-----  
-----  
-----  
-----  
-----.

제40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① -----  
-----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속기, 녹취의 허가) 군검사  
-----  
-----  
-----  
-----  
-----

아야 한다.

제51조(검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이 그 원본을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2조(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① (생략)

②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는 집행을 지휘한 검찰관 또는 법 제119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자를 경유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이나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보석등의 청구) ① (생략)

② 보석의 청구 또는 검찰관 아닌 자가 구속취소의 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제1항의 보석 또는 구속취소에 관하여 검찰관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2항의 부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51조(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군검사-----

-----

-----

----- 군검사-----

-----.

제52조(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군검사 -----

-----

-----

-----

-----

-----.

제55조(보석등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군검사 --

-----

-----

-----.

③ -----

----- 군검사-----

-----

-----.

제56조(기록 등의 제출) ① 검찰

관은 군사법원으로부터 보석, 구속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와 소송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 없이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요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석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은 검찰관은 보석허가가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7조(보석의 심리)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기일을 정한 군사법원은 즉시 검찰관, 변호인, 보석청구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찰관은 위 심문기일에 피고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③·④ (생략)

⑤ 검찰관,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제1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6조(기록 등의 제출) ① 군검

사는 -----  
-----  
-----  
-----  
-----  
-----  
-----  
-----  
-----.

② -----  
-- 군검사는 -----  
-----  
-----.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보석의 심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군검사-----  
-----  
----- 군검사는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군검사-----  
-----  
-----.



⑥·⑦ (생략)

제59조의3(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군사법원은 보석을 허가한 후에 보석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 조건의 이행을 유예하는 결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검찰관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보석등의 취소에 의한 재

구금절차) ①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검찰관은 그 취소결정의 등본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탁군판사가 직접 재구금을 지휘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8조(압수·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와 압수한 물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

⑥·⑦ (현행과 같음)

제59조의3(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  
-----  
-----  
----- 군검사  
-----  
--.

제60조(보석등의 취소에 의한 재

구금절차) ① -----  
-----  
-----  
-----  
-----  
군검사는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압수·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  
-----  
-----

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검찰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79조(주신문) ① (생략)

② 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검찰관,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3. ~ 5. (생략)

③ (생략)

제82조(재주신문) ① 주신문을 한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반대신문이 끝난 후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신문(이하 “재주신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83조(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및 재주

-----.  
군검사-----  
----- 군검사를 -----  
-----.

제79조(주신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군검사-----  
-----
3.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2조(재주신문) ① -----  
-- 군검사-----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3조(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군검사-----  
-----

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을 할 수 있다.

제84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① 재판장이 법 제20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관, 피고인 및 변호인에 앞서 신문을 할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하는 검찰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신문에 관하여는 이를 신청한 자와 상대방의 구별에 따라 제79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② (생략)

제85조(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법 제202조제4항에 규정된 증인에 대하여 재판장이 신문한 후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문하는 때에는 반대신문의 예에 의한다.

제88조의2(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그 일부로 인용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의 열람, 등사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  
-----.

제84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① -----  
-----  
----- 군검사-----  
-----  
----- 군검사-----  
-----  
-----  
-----.

② (현행과 같음)

제85조(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  
-----  
----- 군검사-----  
-----  
-----.

제88조의2(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  
-----  
-----  
----- 복사 -----  
-----.



② (생략)

<신설>

제98조(영장의 방식)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영장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검찰관의 계급, 성명과 그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0조(자료의 제출등) ① ~ ③ (생략)

④ 군판사는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관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0조의3(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 검찰관은 체포영장을 발

② (현행과 같음)

제13절 소송비용

제96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속기·녹음·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법 제227조의2부터 제227조의10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8조(영장의 방식) 군검사-----  
-----  
----- 군검사-----  
----- 군검사-----  
-----  
-----.

제100조(자료의 제출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군검사-----  
-----.

제100조의3(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 군검사는 -----

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군판사에게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0조의4(체포영장의 갱신) 검찰관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3(피의자의 출석거부와 심문절차) ① (생략)  
② 검찰관은 피의자가 심문기일의 출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찰관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수사기록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구속사유의 유무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0조의15(심문장소) 피의자에 대한 심문은 군사법원 청사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  
-----  
-----  
-----.

제100조의4(체포영장의 갱신) 군검사는 -----  
-----  
-----  
-----  
-----.

제100조의13(피의자의 출석거부와 심문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군검사는 -----  
-----  
-----  
-----  
-----.

③ -----  
-----  
군검사 -----  
-----  
-----.

제100조의15(심문장소) -----  
-----  
-----.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헌병대,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제100조의16(심문기일의 절차) ①

· ② (생략)

③ 검찰관과 변호인은 군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군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⑦ 군판사는 심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송헌병 기타의 자를 퇴실하게 하고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제100조의20(변호인의 접견 등)

①·② (생략)

③ 군판사는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의 접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0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① (생략)

-----  
-----  
----- 군사경찰부대 -----  
-----  
-----.

제100조의16(심문기일의 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군검사와 -----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호송군사경찰 -----  
-----.

제100조의20(변호인의 접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군검사 -----  
-----  
-----.

제100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① (현행과 같음)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찰관,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원 서기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6조의3(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등의 제출) ①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변호인, 검찰관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헌병대, 교도소등)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군사법원 서기는 체포적부심사청구사건의 기록표지에 수사관계서

-----  
-----  
-----  
-----  
----- 군검사 -----  
-----  
-----.

제106조의3(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등의 제출) ① --  
-----  
-----  
----- 군검사 -----  
-----  
군사경찰부대-----  
-----  
--.

② ----- 군검사 -----  
-----  
-----  
-----  
-----  
-----.

류와 증거물의 접수 및 반환의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7조(심문기일의 절차) ① 법  
제252조제9항에 따라 심문기일  
에 출석한 검찰관, 변호인, 청구  
인은 군사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  
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도중  
에도 군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12조(준용규정) 제63조 및 제6  
7조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  
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제69  
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검증에 이  
를 준용한다.

제113조(압수·수색·검증의 참여)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압  
수·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때에  
는 법 제235조에 규정된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7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  
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63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허가청구서

-----  
-----.

③ (현행과 같음)

제107조(심문기일의 절차) ① ---  
-----  
----- 군검사-----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2조(준용규정) -----  
----- 군검사 -----  
-----  
----- 군검사  
-----  
-----.

제113조(압수·수색·검증의 참여)  
군검사 -----  
-----  
-----  
-----.

제117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  
청구서의 기재사항) -----  
-----

에는 그 허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찰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119조(고소인의 신분관계자료 제출) ① (생략)

② 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관의 지정을 받은 고소인이 고소할 때에는 그 지정받은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4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① 법 제302조제2항에 규정된 취소는 고등군사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고등군사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검찰관소속부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5조의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법 제306조의3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 · 감정인 · 통역인 · 번역

-----  
-----  
----- 군검사가  
-----.

1. ~ 2. (현행과 같음)

제119조(고소인의 신분관계자료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군검사-----  
-----  
-----.

제124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① -----  
-----  
-----  
-----  
-----  
군검사 소속부대-----  
-----.

②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  
-----  
-----.

1. -----통역인(듣거나

인에게 지급되는 일당·여비  
· 숙박료·감정료·통역료·  
번역료

2. ~ 3. (생략)

제125조의3(국가에 대한 비용부담  
의 절차) ① (생략)

② 제1항의 비용의 부담을 명하  
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찰관이 산정한다.

제126조의2(공소제기 후 검찰관이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법 제309조의3 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  
면으로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

제126조의3(영상녹화물과 열람·등  
사) 법 제260조·법 제236조의2  
에 따라 작성된 영상녹화물에  
대한 법 제309조의3의 열람·등  
사는 원본과 함께 작성된 부분  
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26조의4(군사법원에 대한 열  
람·등사 신청) ① 법 제309조의  
4 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  
--

2. ~ 3.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3(국가에 대한 비용부담  
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군검사가 -----.

제126조의2(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복사  
신청) -----  
-----  
-----.

1. ~ 2. (현행과 같음)

3. ----- 복사-----

제126조의3(영상녹화물과 열람·복  
사) -----  
-----  
-----  
복  
사-----  
-----.

제126조의4(군사법원에 대한 열  
람·복사 신청) ① -----  
-----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열람 또는 등사를 구하는 서류 등의 표목

2. 열람 또는 등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검찰관의 열람·등사 불허 또는 범위 제한 통지서. 다만 검찰관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3. (생략)

③ 군사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신청서 부분을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찰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제1호·제3호의 규정은 법 제309조의11 제3항에 따른 검찰관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군사법원은 검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신청서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피고인 또는

-----.

1. ----- 복사-----  
-----

2. ----- 복사-----  
-----

② -----  
-----.

1. (현행과 같음)

2. 군검사-----복사 -----  
----- . ----- 군  
검사가 -----  
-----  
-----

3. (현행과 같음)

③ -----  
-----  
군검사-----  
군검사는 -----  
-----.

④ -----  
-----  
----- 군검사-----  
----- . ----- 군검사-----  
-----  
-----

변호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6조의5(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등사) ①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군사법원의 허가를 얻어 구두로 상대방에게 법 제309조의3·제309조의11에 따른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군사법원은 법 제309조의4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26조의6(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군사법원은 서면 이외에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판준비와 관련된 의견을 요청하거나 결정을 고지할 수 있다.

제126조의7(쟁점의 정리) ① 사건

-----  
-----.

제126조의5(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복사) ① 군검사-----

-----  
-----  
-----  
-----  
----- 복사-----.

② -----  
-----  
----- 복사-----  
-----  
-----.

③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6(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  
-----  
-----  
----- 군검사-----

-----  
-----  
-----.

제126조의7(쟁점의 정리) ① -----

이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진 때에는 검찰관은 증명하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증명하는 데 사용할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찰관의 증명사실과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상·법률상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밝히고, 그에 관한 증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6조의8(심리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공판준비절차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26조의9(기일외 공판준비) ① 재판장은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공판준비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

-----  
-- 군검사는 -----  
-----  
-----.

② ----- 군검  
사-----  
-----  
-----

-----.

③ 군검사-----  
-----  
-----  
-----

제126조의8(심리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군검사-----  
-----  
-----  
-----

③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9(기일외 공판준비) ① ----- 군검사-----  
-----  
-----

을 미리 준비하게 하거나 그 밖  
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피고인이 제2항에 따른 서면  
을 낼 때에는 1통의 부분을, 검  
찰관이 제2항에 따른 서면을 낼  
때에는 피고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명의  
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변호인  
이 선임된 경우에는 검찰관은  
변호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낼 수 있다.

제126조의10(공판준비기일의 변  
경)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  
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준비기  
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  
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여 공판준비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7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  
사자의 의견 청취) 재판장은 법  
제31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검찰관, 피고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군  
검사가 -----  
-----  
-----.  
----- 군검사는  
-----  
-----.

제126조의10(공판준비기일의 변  
경) 군검사-----  
-----  
-----  
-----  
-----  
-----.

제127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  
사자의 의견 청취) -----  
-----  
-----  
----- 군검사-----



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9조의8(피고인의 모두진술)

① 재판장은 법 제330조에 따른 검찰관의 모두진술 절차를 마친 뒤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야 한다.

② (생략)

<신설>

-----  
-----.

제129조의8(피고인의 모두진술)

① -----  
군검사-----  
-----  
-----  
--.

② (현행과 같음)

제131조의2(피해자등의 의견진술)

①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법 제338조제1항에 정한 피해자등(이하 이 조 및 제131조의3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8조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과 그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들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고, 설명을 촉구할 수 있다.

④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3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의견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⑥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의견진술이나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들에게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1.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변호사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 사

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사실의 인정에 관한 것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피해자등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1항의 경우 법 제204조의2 제1항, 제3항 및 제88조의3을 준용한다.

<신 설>

제131조의3(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①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131조의2 제1항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군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서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

<신 설>

<신 설>

는 때에는 그 서면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1조의4(의견진술·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1조의2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1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제131조의5(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① 군사법원은 법 제260조의2제1항에 정한 피해자등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군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제131조의6(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피해자 변호사는 군판사의 정면에 위치한다.

제131조의7(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① 군사법원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기일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신청은 제131조의5제1항에서 정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 또는 제출과 함께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의 순서와 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게 질문할 수 있고, 설명을 촉구할 수 있다.

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4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⑥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변호사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⑦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나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1조의8(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신 설>

<신 설>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① 제131조의7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은 의견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군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도 해당 기일에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 있을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31조의7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인이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1조의5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제131조의9(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① 재판장은 제131조의7제7항의 사유가 있거나 재판의 진행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견의 진술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의 진술에 갈음하여 의

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군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서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서면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다.

④ 제131조의5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신 설>

제131조의10(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제131조의7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1조의9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신 설>

제131조의11(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재판장은 법 제260조의2제6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



<신 설>

<신 설>

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판절차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검사에게 그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1조의12(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준용) 제131조의5부터 제131조의11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준용한다.

제131조의13(피해자 변호사의 열람·등사의 신청) ① 법 제260조의2제4항에 따른 피해자 변호사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열람·등사할 서류나 증거물을 특정하고, 그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등사가 피해자 등의 피해방어와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31조의2(증거의 신청)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32조(증거신청의 방식) ①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133조(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① 법 제364조부터 제368조까지 또는 제371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찰관은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장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생략)

제133조의2(보관서류에 대한 송부 요구) ① 법 제315조의 규정에

제131조의14(증거의 신청) 군검사

-----  
-----  
-----.

제132조(증거신청의 방식) ① 군검사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3조(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① -----

-----  
-----  
-----  
----- 군검사는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33조의2(보관서류에 대한 송부 요구) ① -----

의한 보관서류의 송부요구신청은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군검찰부, 기타의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이하 “법원 등”이라고 한다)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33조의3(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군사법원은 재판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15조에 따라 법원 등에 대하여 제1항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①

군사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거에 대한 검찰관, 피고인

-----  
-----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3조의3(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  
-----  
-----  
-----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  
--.

② -----  
-----  
-----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

③ (현행과 같음)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① ---

-----  
-----  
----- 군검사-----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생략)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진술할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당해 조서 중 피고인이 진술한 부분과 같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① 검찰관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

-----  
-----.

② (현행과 같음)

③ ----- 군검사 -----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① 군검사는 -----  
-----  
-----  
-----  
-----  
-----  
-----  
-----  
-----  
-----.

② 군검사는 -----  
-----

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③ 제1항의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1. 2. (생략)

3. 신문하는 검찰관과 참여한 자의 성명과 직급의 고지

4. ~ 6. (생략)

④ (생략)

⑤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은 검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① 검찰관은 피의자가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

1. 2.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군검사와 -----  
-----

4.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군검사가 -----  
-----  
-----.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① 군검사는 -----  
-----  
----- 군검사 -----  
-----  
-----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찰관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영상녹화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34조의2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제6호, 제4항, 제5항은 검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34조의4(영상녹화물의 조사)

① 군사법원은 검찰관이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한 경우 이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영상녹화물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봉인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재판장은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서기로 하여금 다시 원

-----  
-----  
-----.

② 군검사는 -----  
-----  
-----  
-----  
-----.

③ -----  
-----  
----- 군검사가 -----  
-----  
-----.

제134조의4(영상녹화물의 조사)

① ----- 군검사가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본을 봉인하도록 하고, 원진술자와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여 검찰관에게 반환한다.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34조의5(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① 법 제372조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검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34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134조의4는 검찰관이 법 제372조제2항에 의하여 영상녹화물의 재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39조(석명권등)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  
-----  
-----  
--- 군검사----- . ---  
-----  
-----  
-----.

제134조의5(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① -----

----- 군검사-----

② -----

----- 군검사가-----

제139조(석명권등) ① -----

--- 군검사-----

② (생략)

③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0조(공소장의 변경) ① 검찰관이 법 제3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하 “공소장의 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신청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공소장의 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검찰관은 공판기일에 제1항의 공소장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장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41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① 법 제358조 또는 제140조의2에

② (현행과 같음)

③ 군검사-----  
-----  
-----  
--.

제140조(공소장의 변경) ① 군검사가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군검사는 -----  
-----  
-----.

⑤ (현행과 같음)

제141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① -----



따른 공판절차의 갱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생략)

2. 재판장은 검찰관으로 하여금 공소장 또는 공소장변경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게 하거나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3.·4. (생략)

5. 재판장은 갱신전의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서류 또는 물건과 증거로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고, 검찰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검찰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법 제347조, 법 제34

-----  
-----.

1. (현행과 같음)

2. ----- 군검사로 -----  
-----  
-----  
-----  
-----.

3.·4. (현행과 같음)

5. -----  
-----  
-----  
-----.  
-----  
-----  
----- 군검사 -----  
-----  
-----  
-----.

② -----  
-----  
----- 군검  
사 -----  
-----  
-----

8조 및 법 제348조의2에 규정된 방법에 갈음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

제142조(변론시간의 제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4조(판결선고시의 훈계)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제144조의2(보호관찰의 취지 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형법 제59조의2,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이

-----  
-----  
-----  
--.

제142조(변론시간의 제한) -----  
-----  
군검사-----  
-----  
-----.

제144조(판결의 선고)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②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제144조의2(보호관찰의 취지 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① ----  
-----  
-----  
-----

하 “보호관찰등”이라고 한다)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145조의2(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의 송달) 군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46조의3(청구서부분의 제출과 송달) ① 형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검찰관은 청구와 동시에 청구서의 부분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2조의5(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① 검찰관 또는 변호인은 항소심의 증거조사가 종료한 후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 “보호관찰 등” -----  
-----  
-----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5조의2(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  
-----  
-----  
-----  
-----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서  
초본을 송달할 수 있다.

제146조의3(청구서부분의 제출과 송달) ① -----  
-----  
----- 군검사는 -----  
-----  
-----.

② (현행과 같음)

제152조의5(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① 군검사 -----  
-----  
-----  
-----  
-----.

②·③ (생략)

제152조의6(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① 항소심의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검찰관은 원심 판결의 당부와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검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제1항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3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법 제433조, 법 제434조 또는 법 제436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고등군사법원은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군사법원에 송부하고, 고등검찰부 검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송부를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없이 그 군사법원에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2조의6(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① -----  
-----  
군검사는 -----  
-----  
-----.

② ----- 군검사-----  
-----  
-----  
-----.

제153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  
-----  
-----  
-----  
-----.

1. -----  
-----  
-----  
----- 군검사-----  
-----.
2. -----  
-----

대응한 군검찰부 검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군교도소, 그 지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있는 경우  
에는 고등검찰부 검찰관은 제1  
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피고인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군사법원 소재지의  
군교도소, 그 지소 또는 미결  
수용실에 이감한다.

제165조의2(서류등의 제출) 검찰  
관은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  
서류 및 증거물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5조의4(보통의 심판) ① 군사  
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법 제501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  
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검찰관  
은 즉시 피고인수에 상응한 공  
소장부분을 군사법원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생략)

----- 군검사-----  
-----.

3. -----  
-----  
----- 군검사는 --  
-----  
-----  
-----  
-----.

제165조의2(서류등의 제출) 군검  
사는 -----  
-----  
-----  
-----.

제165조의4(보통의 심판) ① -----  
-----  
-----  
-----  
-----  
-----  
군검사-----.

② ----- 군검사  
는 -----  
-----  
-----.

③ (현행과 같음)

제165조의6(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501조의2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 헌병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 헌병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3. 경범죄처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 또는 도로교통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로서 통고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관할 헌병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제165조의7(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① 법 제501조의21 제1항

제165조의6(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1. -----

-- 군사경찰부대-----

2. -----

----- 군사경찰부대-----

3. -----

----- 군사경찰부대-----

제165조의7(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① -----

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관할헌병부대의 장에게 통고처분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범칙금(도로교통법위반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말한다)또는 각 범칙행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정하여진 범칙금의 1.5배액을 예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불출석심판청구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납액을 예납한 때에는 이를 수령한 헌병과의 군사법경찰관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불출석심판청구서의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관할 헌병부대의 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군사경찰부대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사경찰과

④ 군사경찰부대

제167조(의의·이의의 신청등의 통지) 군사법원은 제166조에 규정된 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하를 검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0조(공판정의 좌석등 배치) 공판정에서의 재판관·서기·검찰관·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에 관하여는 공판정에서의좌석에 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167조(의의·이의의 신청등의 통지) -----  
-----  
-----  
--- 군검사-----  
--.

제169조의2(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① 소송관계인은 기일 외에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구속, 공소사실 또는 양형에 관하여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을 어긴 소송관계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기일에서 그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

제170조(공판정의 좌석등 배치) -  
-----군검사-----  
사-----  
-----  
-----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358